■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8. 11. 5.>

#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일 | 처리기간 10일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성명 | 생년월일<br>(외국인등록번호)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
| 법 인 | 명칭 | 전화번호 |
| | 소재지 | |
| | 설립 허가일 | 설립허가번호 |
| 대표자 | 성명 | 생년월일<br>(외국인등록번호)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

「민법」 제42조제2항,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「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해 양 수 산 부 장 관**

귀하

**해 양 경 찰 청 장**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| 1. 정관 변경 사유서 1부<br>2. 개정될 정관(신·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) 1부<br>3.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<br>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| 수수료<br>없 음 |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 수 → 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 재 → 결과 통지

신청인 처리기관: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